

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8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(제2호가목은 제외한다)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나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1차 위반	2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2항	30	50
나.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	법 제66조제2항	50	100
다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호	100	200
라.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1호	200	300
마.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	법 제66조제1항제2호	150	300